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2
----------	-----

2022. 4. 1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이재민 의원 대표발의(7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4. 1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재민 의원)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 작성 주체를 간사에서 위원회 자체로 규정하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두도록 함. 인용된 관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며,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규정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안제 4조제4항, 안 제8조의2 신설)
- 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화하고, 청소년쉼터 시설이 폐쇄됨에 따

라 이를 반영함.(안 제22조제1항제12호, 제22조제1항제5호 삭제)

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신설함.(안 제6조제4호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7호,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4항,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호)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이용 편의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2 조례안의 개정 내용 및 평가

- 2006년부터 시작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하에서는 ‘알법 사업’이라고 줄여서 부름)’은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입법 의도가 한 눈에 드러나도록 법령의 용어와 문장체계 등을 명확하

게 정비하는 것을 말함.

- 알법사업은 우리의 정치·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 사회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 등에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순화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금번 개정안은 비교적 단순한 문장정비 차원에서 어법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활용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현 조례는 제4조제4항에서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 이 간사가 되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¹⁾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자를 ‘간사’ 가 아닌 ‘위원회’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바, 개정안을 이를 반영하였음.

검토하건데 주요문건으로 분류되는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도 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다만 업무분장에 따라 간사 또는 그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1)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2020)

▶ 회의록 작성의 주체는 위원장 또는 간사가 아닌 위원회 자체로 규정한다.

정비 전	정비 후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 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정비기준을 반영함은 타당하다고 보임.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한다. <u>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후단 삭제></u></p> <p>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전,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p>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2
----------	-----

발의연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이재민·복진경·김진홍·
이상애·이호귀·이재진·
김광심(이상7인)

1.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 작성 주체를 간사에서 위원회 자체로 규정하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두도록 함. 인용된 관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며,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규정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안제4조제4항, 안 제8조의2 신설)

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화하고, 청소년쉼터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2조제1항제12호, 제22조제1항제5

호 삭제)

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신설(안 제6조제4호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
조제7호,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4항, 제11조제7호, 제12
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반에 대하여”를 “전반을”로 한다.

제11조제7호 중 “이용실태조사”를 “이용 실태 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를 “비영리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명과 해임하고”를 “임명·해임하고”로, “임명과 해임한”을 “채용·해고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확인·검사 할”을 “확인·검사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육수요조사”를 “보육 수요 조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해임하고”로, “임명과 해임한”을 “채용·해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내용”을 “내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 하여야 하며”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으로,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의 “0”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운영정지처분”을 “운영정지 처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명하여야하며”를 “명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활동 할”을 “활동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하반기”를 “상·하반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조건에”를 “조건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u></p> <p>8. (생략)</p> <p>제4조(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한다. <u>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u>해촉</u>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는 <u>연1회</u> 개최하고,</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u>----- -----</p> <p>8. (현행과 같음)</p> <p>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후단 삭제></u></p> <p>제6조(해촉) ----- ----- ----- <u>해촉할</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8조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u></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연 1회</u> -----</p>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⑦ (생략)

<신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
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에 대
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어린이집의 이용실태조사 및

3분의 1 이상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
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
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
여 보존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
----- 위원에게 -----

제10조(설치·운영)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전반을 ---

제11조(기능) -----

1. ~ 6. (현행과 같음)

7. ----- 이용 실태 조사 -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정보 제공 및 발
간

8. ~ 16. (생략)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업무를 보육 또는 아
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
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
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 보
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3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
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

8. ~ 16.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

----- 비영리
법인 또는 -----

② -----

----- 임명·해임하고 -----
----- 채용·해고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
다.

③·④ (생략)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
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
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
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
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
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
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
법에 따른다.

② 제1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

탁기관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감독) -----

--- 확인·검사할 -----.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육 수요 조
사-----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운영) ① -----

----- 비영
리법인-----
-----.

② ----- 비영리법인이나 단
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⑤ (생략)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0

② ~ ⑨ (생략)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해임하고---

----- 채용·해고한 -----

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

----- 내용 및 -----

-----.

④ -----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

----- 수탁자-----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

----- <후단 삭제>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위탁의 제한)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 4. (생략)

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6. ~ 10. (생략)

하는 -----

-----.

1. ~ 6. (현행과 같음)

7. ----- 운영정지 처분-----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의 제한)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1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 사업 시설

② (생 략)

제23조(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3. (생 략)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1인이 3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5. (생 략)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명하여야 하며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활동할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생략)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하반기 -----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반환) -----

-----.

1. ~ 3. (현행과 같음)

4. -----
조건을 -----